

제2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오 산 시 장 이 권 재

2024년 9월 25일

오산시 조례 제2196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가목”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규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를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를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로,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를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차량”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로,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뉴경기 아이플러스”를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의 다자녀가정 우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에서”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9조”를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라”로, “50경감”을 “50 경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정기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차량은 월정기권 및 월야간권 금액의 100분의 70 경감
2.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차량은 월정기권 및 월야간권 금액의 100분의 50 경감

⑥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중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금액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13조제7호 중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를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를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설치비용의 보조”를 “설치 및 관리비용의 보조”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 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정책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봉 진 중
	팀 장 직위·성명	주차시설팀장 양 만 석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성 우 (8036-7729)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1. 노상주차장

(단위 : 원)

구 분	처음 1시간 기준	2시간까지 (매 10분 기준)	2시간 초과 (매 10분 초과 시 마다)	12시간 주차권	비고
1급지	무료	200	400	10,000	1구획당
2급지	무료	100	200	5,000	1구획당

2. 노외주차장

(단위 : 원)

구 분	처음 1시간 기준	매 10분 초과 시 마다	12시간 주차권	월야간권 (19:00~익일09:00)	월정기권	비고
1급지	무료	250	6,000	40,000	80,000	1구획당
2급지	무료	200	4,000	30,000	60,000	1구획당

(단위 : 원)

구 분	처음 1시간 30분 기준	1시간 30분 초과 이후 3시간 까지 (매 10분 당)	3시간 초과 (매 10분 당)	월 야간권 (19:00~익일09:00)	월 정기권	비고
오색시장 제1,2 공영주차장	무료	200	300	30,000	60,000	1 구획당

(단위 : 원)

구분	처음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매 10분 당)	월 야간권 (19:00~익일09:00)	월 정기권	비고
오산천 공영주차장	무료	300	30,000	60,000	1 구획당

※ 공영주차장별 야간 시간대 이용률에 따라 월야간권(19:00~익일09:00)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3. 거주자 전용주차장

(단위 : 원)

구분	전 일	주간	야간
운영시간	00:00~24:00	09:00~18:00	18:00~09:00
주차요금	월 30,000	월 20,000	월 20,000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 시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3.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노상주차장 운영
 - 1) 운영시간: 09:00 ~ 23:00
 - 2) 주차장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나. 노외주차장 운영: 1일 24시간 운영
 - 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자연재해·시설물정비·인근 교통 등의 여건에 따라 운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수탁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1급지: 상업지역
 - 나. 2급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 밖의 지역
5.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하며,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1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잘못 진입하거나 회차 등의 경우에는 10분까지 무료로 한다.
 - 나. 주간정기권은 주차장 공실률에 따라 1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 다. 월정기이용자의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 사용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반환한다.
 - 라. 지역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와 필봉산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은계동 및 삼미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는 처음 180분까지 무료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마. 삼미공영주차장은 캠핑카(카라반)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며,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 1급지의 월정기권을 적용(감면 제외)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7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제외한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시설면적 135제곱미터당 1대
3의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로 계산하되, 호실당 주차대수가 0.7대 미만인 경우에는 호실당 0.7대 이상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13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가구·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 프 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9.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 ○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에서 세대·가구·호실로 설치기준을 정하는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 및 대수선(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함에 따라 추

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0분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

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21. 5. 17>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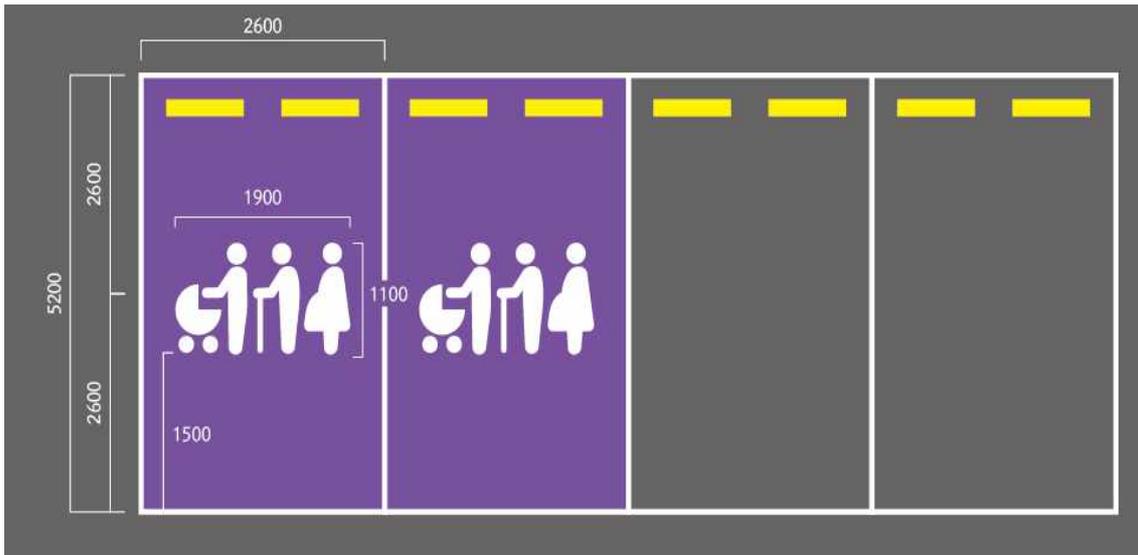
600*600



900*40



<주차구획선 표식>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지정된 보라색(C65, M76, Y8, K0)을 사용한다.
2. 글씨: 로고와 맞춰 흰색 글씨만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설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3. 설치기준 (법적설치 인정대수)	<p>가.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p> <p>나.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30% 이하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은 1대로 본다)</p>
4. 설치조건	<p>가.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대형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제2호의 설치 가능 시설물 중 집합건축물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5. 예외	<p>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나.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후 시설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 초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초과설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다. 시장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u>법제6조제2항</u>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6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u>법 제6조제2항</u>----- ----- ----- -----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 -----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시철도건설사업(「<u>철도건설</u></p>	<p>6. ----- 「<u>철도건설</u></p>

현 행	개 정 안
<p>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법」 제2조----- --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 ----- ----- ----- -----</p>
<p>7. (생 략)</p>	<p>7.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규모별 노외주차장 설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 ----- -----</p>
<p>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p>	<p>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외: 사업부지 면적의 0.65퍼센트</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p>	<p>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p>

현행	개정안
<p>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시간은 1회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6. 11. 14, 개정 2018. 5. 11, 2019. 7. 19, 2021. 9. 24></p>	<p>----- ----- ----- ----- ----- -----</p>
<p>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p> <p>2. ~ 8. (생략)</p> <p>②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 중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차량 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p> <p>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p>	<p>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p> <p>-----</p> <p>2. ~ 8.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 -----</p> <p>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 ----- -----</p>

현행	개정안
<p>4. 「<u>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u>」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u>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u>」 제2조제2호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u>뉴경기 아이플러스 카드</u>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p> <p>5. <u>도에서</u>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u>도에서 인정</u> 하는 유효기간 내)</p> <p>6. 「<u>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u>」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u>50경감</u>(입증자료 제시)</p> <p>7. (생략)</p> <p>8. 「<u>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u>」 제7조에 <u>따른</u>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차</p>	<p>4. 「<u>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u>」 제2조제2호----- ----- 「<u>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u>」 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의 다자녀가정 <u>우대</u> ----- ----- -----</p> <p>5. 「<u>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u>」 제19조제1항에 따라 <u>도에서</u> ----- ----- ----- ---</p> <p>6. 「<u>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u>」 제9조에 따라 ----- ----- ----- <u>50 경감</u> ----- ---</p> <p>7. (현행과 같음)</p> <p>8. ----- ----- ----- <u>따라</u> ----- -----</p>

현 행	개 정 안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② ~ ④ (생략)</p>	<p>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 ----- ----- -----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참 고 자 료

□ 제안이유

- 주차요금 감면(최초 1시간 무료)을 통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주차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0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항, 제6항 신설
 - 주차요금 정기간 감면 조항 신설 및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금액이 높은 하나의 규정만 적용
- 제21조의2(보조금) 제1항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 주차장 설치 비용만 지원 가능
 - 개정 : 주차장 설치 비용 + 관리비용(배상보험 가입비용 등)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
 - 최초 무료 시간(1시간) 반영 및 노상주차장 운영 시간 확대
 - 삼미공영주차장 캠핑카 월정기간 요금 규정
-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위법 시설 범위 적용
 - 기존 : 골프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을 포함)
 - 개정 : 골프연습장